

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주요 내용

농림수산식품부

〈기본원칙〉

- ◆ 先,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→ 後, 환경규제 강화 ◆
-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
-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

1.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

- (현행)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폐율을 60%까지 확대하여 조례로 운영할 수 있으나, 일부 지자체 미 제정 또는 하향 설정(20~50%)
* 162개소 중 60% : 104(64%), 20~50% : 47(29%), 미 제정 : 11(7%)
- (개선방안) 국토해양부 및 지자체를 통해 조례 제정 또는 개정 토록 협조 요청, 독려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반 구축

2.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

- (현행) 가설건축물 재질은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
- (개선방안) 축사용 가설건축물 벽과 지붕은 합성수지 재질(일명 썬라이트), 바닥은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-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자돈용 컨테이너도 추가하고,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조치 의무화

3. 축산분뇨처리시설 면제

- (현행) 육계·오리의 경우 흙바닥에 사육하고 있어 축사로 인정되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
- 흙바닥에 수분조절재(왕겨 등)를 도포하여 사육하고, 가축분은 일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, 신고하지 못해 무허가 축사 유지
- (개선방안) 축사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을 도포시 축사로 인정하고, 재입식 때 분뇨를 위탁처분할 경우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*
- * 가금류 축사의 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통해 적법화 가능

4. 축사거리제한 재 설정

- (현행) 가축분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며, 환경부 권고안에 근거하여 거리제한 기준 강화
- (개선방안) 환경부·농식품부 공동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권고안 또는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재 설정

5. 운동장 적용 확대

- (현행) 젖소에 한하여 운동장 허용
- (개선방안) 젖소 뿐만 아니라 한·육우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축종으로 확대*
- * 운동장은 가설건축물에 포함되어 건폐율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일부 해소

6.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

- (현행)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·증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축사거리제한*으로 인해 인·허가 불가
- * 가축별 축사거리제한 : 소·말 100m, 젖소 250m, 돼지·개·닭·오리 500m

-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가 축사거리제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 또는 가설건 축물 축조 신고가 근본적으로 차단
- (개선방안) 가축분뇨법 개정시 '축사거리제한' 을 한시적으로 유예함으로써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 가능
- 시·군별 조례 제정 이전에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에 대하여 축사거리제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부칙에 유예기간 설정*
- * 개별농가에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계획
- ※ 소방 관련시설 개선은 소방방재청 협조하에 법령 개정 추진(2월)

〈Q&A〉 질의 응답으로 알아보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

1. 금번 '무허가 축사 개선대책' 으로 인한 구제에서 제외될 수 있는 20% 축산농가에 대한 정부 입장은?

- 금번 구제에서 제외되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이후*에 축사를 설치하였거나, 타인 토지 점유 등 법을 위반함으로써 제도개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
- *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한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이전을 명할 때 1년 이상의 유예기간 및 재정적 지원·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 실시
- 타 분야와의 형평성, 준법정신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농가에서 이전 또는 토지 매입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
- 다만,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전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

2.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은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법률인데, 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지?

- 금번 "무허가 축사 개선대책"은 관계부처의 실무협의(7차례), 현지 실태조사(4차례) 및 총리실 주관 협의회 등을 통해 마련된 것임

- 관계부처별 역할,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 체계 유지를 하는 한편,
- 분기별로 세부과제별 추진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

3. 축산농가 등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 계획은?

- “무허가 축사 개선대책” 확정(2월) 후,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순회설명회를 개최(3월)할 계획임
-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축사폐쇄 명령 등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,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등을 설명하고,
-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수렴하여 보완할 계획임

4. 축산농가에서 언제부터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는지?

-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규정 개정 이후, 금년 10월부터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- 환경부, 국토해양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조기에 관련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
- 다만, 입지제한 지역 내 축사·타인 토지 점유 등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는 이전 또는 토지 매입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함

5.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은?

- 관련 법령 개정 후, 개별농가에서 축사현황을 측량하고, 시·군 민원실에 “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” 작성하여 제출하면 됨
- 시·군에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신고 또는 허가 여부 확인 후,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, 2년마다 존치기간 연장 